

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-149호

「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이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 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10월 30일

대전광역시의회의장

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1. 제안 이유

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이 개정 시행('17. 8. 9)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, 자살예방시행계획에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.

2. 주요 내용

가. 자살예방시행계획에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함(안 제5조).

나. 자살위험자,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게 심리·상담서비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(안 제10조).

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)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실

(전화 042-270-5127, FAX 042-270-5039, E-mail : pooh7298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사·연구
2.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상담·교육 및 홍보
3.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
4. 자살위기대응 체계 구축
5.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·치료 및 사후관리
6. 자살예방 인력 양성 및 교육
7.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
8.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

제7조제2항 중 “둔다”를 “둘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“(자살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)”을“(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”을 “자살위험자,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자살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심리·상담서비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) --- 자살위험자,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----- -----</p>

관계 법령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
[시행 2017.8.9.] [법률 제14561호, 2017.2.8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(이하 "자살위험자"라 한다)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,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7조(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살예방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생명존중문화의 조성
2.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
3. 아동·청소년·중년층·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
4.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
5.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
6.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·치료 및 사후관리
7.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
8.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
9.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

- 10.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
- 11. 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
- 12.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계획수립의 협조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계 공공기관,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지방자살예방센터(이하 "자살예방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1. 자살 관련 상담
- 2.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

3. 자살시도자 사후관리
4.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
5.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
6.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의 원 명 단

연번	의 원 명	서 명	비 고
1	권종현	권종현	
2	박영희	박영희	
3	박상숙	박상숙	
4	박강현	박강현	
5	김문익	김문익	
6	정기현	정기현	
7			
8			
9			
10			
11			
12			
13			
14			
15			